

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

제정 2022. 02. 24.

개정 2025. 02. 24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문경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생활체육지도자”(이하 “지도자”라 한다)란 “체육지도자 자격증”을 보유하고 문경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 채용되어 지역의 생활체육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.
- “생활체육 지도”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체육전문 특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지도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(slims.sportal.or.kr)”(이하“통합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이란 체육회가 지도자의 원활한 생활체육 지도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, 지도활동 계획, 실적부의 기록·보고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“체육지도자 자격증”이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.
- “전환배치”란 지도자의 직무종류 또는 직무내용, 근무장소 등을 변경하는 인사 이동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체육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지도자에게 적용한다. 다만,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채용) ① 지도자는 체육회의 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이 채용한다.

② 회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인원, 선발종목, 채용시기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.

③ 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을 실기 및 면접시험의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④ 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시·도체육회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(과장 이상)가 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, 심사위원으로 지정된 자는 불참 시 동일 업무 담당자 중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5조(공정채용의 원칙) ① 지도자는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.

② 체육회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체육회는 입사지원서,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체육회는 채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도자 선발과정을 시·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공정채용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.

제6조(채용시험의 단계) ① 채용시험은 제1차, 제2차,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제1차 전형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② 체육회는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선발의 방법)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심사로, 제2차 시험은 필기시험(지도 종목 수업 지도안 작성) 및 수업능력 평가(실기 지도 포함)로, 제3차 시험은 적성면접 평가로 한다.

② 제2차 시험은 현장 지도 종목 수업의 실연(實演) 등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목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.

③ 제3차 시험은 적성면접으로, 지도자로서의 적성·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.

④ 회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가점) ① 채용시험 선발 종목의 “체육지도자 자격증”을 보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도 가능한 타 종목의 “체육지도자 자격증”을 보유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② 응시자 중 교육대학(원), 사범대학(대학의 교육과를 말함)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,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입상자,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, 국제대회 입상자, 국가대표 출신, 청년층(만 34세 이하)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.

③ 가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을 적용한다.

제9조(채용시험 실시 및 공고) ① 채용시험은 지도자의 결원 및 배치인원 증원 발생 시 회장이 “체육지도자 자격증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
② 회장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, 장소, 방법, 종목, 배점비율, 응시자격, 원서제출절차 및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고기간이 체육회 채용 관련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고기간을 달리할 수 있으며,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응시자의 제출서류)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응시원서(별지 제1호 서식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육회에 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1. “체육지도자 자격증”의 사본(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발급예정증명서)
2.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회원종목단체가 발급하는 종목별 대회 입상 경력 증명서 등)
3. 이력서, 자기소개서
4. 기타 지도종목 교안 등 회장이 정하는 사항

제11조(합격자의 결정) ① 제1차 서류전형 합격 인원은 선발 인원의 4배수 이상으

로 한다. 다만, 지원자의 수가 선발 인원의 4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을 면제한다.

② 제2차 시험(필기 및 수업능력평가: 50점 만점) 및 제3차 시험(적성면접평가: 50점 만점)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.

1. 제2차 시험의 고득점자
2.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
3.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결정자

④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을 합산한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.

⑤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.

제12조(채용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고, 채용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.

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)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
3. 타 체육단체(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) 재직 시 부패행위,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4.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행위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13조(근로계약) ① 회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거나,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업무, 휴직 대체를 위해 지도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무 상한연령(만 60세)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4조(합격자의 제출서류) 채용이 확정된 지도자는 채용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2. 제10조의 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” 이외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3. 경력증명서
4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5. 건강진단서(의료기관 발행)

제15조(전환배치) ① 회장은 지도자의 능력, 적성, 경력과 지역의 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환배치를 할 수 있다.

1. 지도자의 지도종목, 지도대상, 담당업무 등을 변경하는 전환배치
2. 동일 시도 내 시·군·구체육회 지도자 간의 전환배치

② 회장은 2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한하여 전환배치를 할 수 있으며, 회장이 지도자를 전환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지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환배치의 경우, 동일 시도 내 쌍방의 시·군·구체육회장 및 해당 지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환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.

④ 체육회가 전환배치를 실시할 때에는 즉시 전환배치 관련 내용을 시·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16조(근무성적 평정) ① 회장은 매년 근무성적 평정표(별지 제3호 서식)에 따라 지도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근무성적 평정은 체육회 사무국장과 지도자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회장은

평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단, 지도자 관리부서장 또는 사무국장이 공석인 경우 체육회 인사규정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정부가 육성하는 공공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클럽의 사무국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.

④ 지도자의 지도 실적과 관련한 근무성적 평정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계획 및 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한다.

⑤ 회장은 지도자 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자가 거짓으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도자 배치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.

제17조(휴직, 복직 등) 지도자의 휴직, 복직, 정년, 퇴직, 근로계약의 해지, 해고의 예고 등에 관한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 인사 및 복무규정(이하 “복무규정” 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제18조(담당업무)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
2.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, 지도 및 관리
3.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·보급
4.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
5. 생활체육 관련 상담·행정업무

② 지도자는 전공종목 외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.

③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19조(근무시간)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(중식시간 제외), 주 40시간(초과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)으로 하고, 근무시간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고 1일 지도방문 횟수 등은 정부의 「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지침」에 따른다.

② 기타 근무시간 관련사항은 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.

제20조(출장) ① 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.(통합관리시스템 실적보고서 작성 및 비치)

② 출장여비는 체육회 여비규정과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(교육) ① 회장은 지도자의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기본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지도자는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함양 교육과 사무국 외에서의 각종 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
③ 체육회는 제2항의 지도자 교육 미 수료자(무단불참자 및 교육태도 불성실자 등)에 대해서는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2조(타 직업종사의 제한) ① 지도자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.

② 지도자는 근무시간 이외에 체육 지도 및 강의, 선수활동 등 유사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. 다만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에 신고서(별지 제5호서식)를 제출해야 한다.

③ 회장은 지도자가 근무시간 이외의 제2항의 유사직무 또는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의 종사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, 지도자 또는 체육회의 품위를 저해시킨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다.

④ 지도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,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중 지도자의 노무를 투입하는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.

⑤ 지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타 체육단체(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)의 임·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.

⑥ 타 기관(단체)의 사업에 지도자를 파견 또는 근무하도록 할 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3조(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파견) ① 정부에서 육성하는 공공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는 소속 체육회 지도자의 근무조건(근무시간, 휴가, 휴직 등)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지도자의 공공스포츠클럽 파견수당은 해당 클럽에서 지급할 수 있고, 파견기간은 해당 체육회에서 정한다.

제24조(손해배상) 지도자가 업무수행 중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지도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25조(복무관리) ① 지도자의 복무관리자는 체육회 사무국장(사무국장이 없을 경우 그 직무대행자)으로 한다.

② 복무관리자는 지도자 운영실태 점검 및 수시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지도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해 제2조제3호의 통합관리시스템(대한체육회 구축)을 이용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복무관리자는 채용 시 지도자의 인사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.
2. 지도자는 지도활동 후 2일 내에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를 입력하여야 한다.
3. 기타 세부사항은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및 정부의 「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지침」에 따른다.

제26조(휴가·휴일 등) 지도자의 연차휴가, 생리휴가, 경조사휴가, 병가, 휴일,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체육회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7조(공가) ①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(유급)를 부여한다.

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
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에 참여할 때
3. 대한체육회, 시·도체육회, 체육회가 주관하는 지도자 직무교육에 참가할 때

② 지도자의 공가 관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체육회 복무규정에

따른다.

제28조(임산부의 보호 등) 임신 중인 지도자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, 태아검진 시간 허용, 난임치료 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육아시간,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,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인사규정(또는 복무규정)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9조(급여의 결정) ① 지도자의 급여는 정부 예산에 따라 매년 정한다.

② 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은 담당업무의 특성, 난이도 및 자격조건,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체육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30조(급여지급일 등) 지도자의 급여 지급일, 급여 계산기간, 지급방법, 공제, 연장수당 등은 체육회 복무규정과 제수당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1조(퇴직급여)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퇴직급여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.

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.

④ 회장은 지도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의 납입 및 지도자의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2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, 징계양정의 기준, 징계사유, 징계절차, 범죄고발 등은 체육회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3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지도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접수·조사·피해자 보호·조치·예방교육 및 고충처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그에 따라 정한

체육회 관련규정에 따른다.

제34조(성희롱·성폭력 행위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성희롱·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지도자 관련 성희롱·성폭력 행위에 대한 접수·조사·피해자 보호·조치·예방교육 및 고충처리 등 성희롱·성폭력 행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그에 따라 정한 체육회 관련규정에 따른다.

제35조(준용준칙) ① 체육회는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·운용할 수 있다.

② 지도자의 채용, 복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 다만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제36조(규정 개정) 이 규정을 제·개정할 때에는 시도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며, 근로기준법 제94조(규칙의 작성, 변경 절차)에 따른다.

부 칙 <2022. 2. 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및 가점

(제8조제2항 관련)

가점대상	우대사항
교육대학(원), 사범대학(대학의 교육과)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	제1차 및 제2차 시험 만점의 10% 가점
대한체육회,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입상자	
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	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5% 가점
국제대회 입상자	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10% 가점
청년층(만 34세 이하),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성매매피해자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여성가장, 노숙인)	
국가대표 출신	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15% 가점

* 가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을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지 원 서

접 수 번 호	
------------	--



인 적 사 항	성	명	
	생	년	월 일
	자 격 증		주 종 목
		부 종 목	

근 무 희 망 지	1 지역	
	2 지역	
	3 지역	

본인은 ○○○○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모집에 응모코자
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신청인 (서명날인)

○○○○체육회장 귀하

접 수 증

■ 접 수 번 호 :

■ 성 명 :

■ 생 년 월 일 :

20 년 월 일

○○○○체육회장

○ ○

수험 표

사 진	접수번호	
	생년월일	
	성 명	
실기종목		

20 년 월 일

○○○○체육회장

생활체육지도자 근로계약서

문경시체육회와 근로자(생활체육지도자)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.

□ 다 음 □

1. 계약 체결자

사 용 자	사 업 체 명	문경시체육회
	소 재 지	경북 문경시 점고길 15
	대 표 자	문경시체육회장
근 로 자	성 명	
	생 년 월 일	
	주 소	

2. 계약조건

가. 기본사항

계 약 기 간	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.				
신 분	무기계약직 직원(생활체육지도자)				
임 금	급여 월 원 (계약일 기준) *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에 따름 - 문화체육관광부				
취 업 장 소	문경시체육회				
담 당 업 무	지역 생활체육 지도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, 기타 체육회 관련 배정업무				
근 무 일 및 근 무 시 간	근 무 일	휴무일	주휴일	근무시간	휴게시간
	월 ~ 금	토요일	일요일	09:00~18:00	12:00~13:00
	근로자는 지도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의 근무시간, 근무일,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. (예, 일요일 근무시 주중 1일 휴무)				
급여지급일	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 매월 25일				
급여지급방법	개인통장으로 지급				
휴 일	주휴일, 근로자의 날, 관공서의 공휴일, 기타 정부 및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				
휴 가	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 적용				

나. 기타사항

본 계약은 계약일 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 복무규정 및 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른다.

20 년 월 일

사용자	문경시체육회 회장 (인)(서명)	근로자	문경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(인)(서명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본 서식은 표준안이므로 근로시간,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여 사용 가능(예: 육아휴직 대체인력(기간제 계약직) 계약서 수정)

근무성적 평정표

피 평 정 자	소 속		평 정 자	소 속	
	성 명			직 명	
	생 년 월 일			성 명	

◆ 평정기간 : (평정기준일 :)

평정요소	배점	평정기준	평정 등급 및 점수					계										
	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										
1. 근무실적	40	○ 생활체육 지도활동 계획대비 실적(지도건수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탁월</td> <td>우수</td> <td>보통</td> <td>미흡</td> <td>불량</td> </tr> <tr> <td>100~90%</td> <td>89~80%</td> <td>79~70%</td> <td>69~60%</td> <td>60% 미만</td> </tr> </table>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100~90%	89~80%	79~70%	69~60%	60% 미만	40-36	35-31	30-26	25-21	20-0	
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													
100~90%	89~80%	79~70%	69~60%	60% 미만														
2. 프로그램	20	○ 생활체육 지도활동 프로그램 수립 능력	20-18	17-15	14-12	11-9	8-0											
3. 현장평가	20	○ 생활체육 지도활동 프로그램 현장 적용 및 운영 능력	20-18	17-15	14-12	11-9	8-0											
4. 직무능력	20	○ 근무 책임감 및 성실성	20-18	17-15	14-12	11-9	8-0											
직무태도 (감점)		○ 징계처분(1회당)	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정직</td> <td>감봉</td> <td>견책</td> </tr> <tr> <td>15</td> <td>10</td> <td>5</td> </tr> </table>	정직	감봉	견책	15	10	5										
		정직	감봉	견책														
		15	10	5														
○ 복무위반(1회당)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무단결근</td> <td>무단지각</td> <td>무단조퇴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3</td> <td>3</td> </tr> </table>	무단결근	무단지각	무단조퇴	5	3	3												
무단결근	무단지각	무단조퇴																
5	3	3																
○ 사업지침 위반(1회당)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허위 지도활동</td> <td>그 외 지침 위반</td> </tr> <tr> <td>10</td> <td>5</td> </tr> </table>	허위 지도활동	그 외 지침 위반	10	5														
허위 지도활동	그 외 지침 위반																	
10	5																	
○ 체육회 교육 참여자세(1회당)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무단불참</td> <td>무단퇴소</td> <td>태도불량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3</td> <td>2</td> </tr> </table>	무단불참	무단퇴소	태도불량	5	3	2												
무단불참	무단퇴소	태도불량																
5	3	2																
합 계 점 수(총점 100점)																		

- ※ 지방체육회는 “근무실적(40)” 을 제외한 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세부 평정방식(평정척도 등)을 마련하여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을 시행해야 한다.
- ※ 평정자는 평정결과가 피평정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.
- ※ “근무실적(40)” 은 정량지표이므로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 지도활동 “계획 대비 실적(실행률)” 을 확인하여 평정결과를 산출한다.
- ※ “프로그램(20), ” 현장평가(20) “, ” 직무능력(20) “은 사무국장(처장)과 지도자 관리 보직자가 각각 평정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평정점수로 한다.
 - 지도자 관리 보직자가 없는 지방체육회는 사무국장 평정점수만 반영한다.
- ※ “직무태도” 감점사유가 발생할 시, 각 평정요소에 대한 합산 점수를 산출한 후 평정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.
 - 지도자교육 수료 항목은 대한체육회에서 지방체육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.
- ※ 평정자는 천재지변, 전염병 등 발생에 따라 지도활동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, 근무성적평정표 관련사항(평정요소, 배점, 기준, 등급 및 점수 등)을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겸직 신고서

성 명		생년월일	
소 속			
겸 직 내 용	종 사 처 (상호명, 전화번호, 주소)		
	종사직무 (※구체적으로 기재)		
	종사기간 (시작일 - 종료일)		
	종사시간 (시작시간 - 종료시간)		
유의사항	「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」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업의 종사(겸직)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, 지도자 또는 체육회의 품위를 저해시키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였습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숙지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		
「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 종사(겸직)에 대해 신고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위 작성자 (인)			
00체육회장 귀하			